

무역상무연구
제65권
2015. 2, pp. 141~160.

논문접수일 2015. 01. 30.
심사완료일 2015. 02. 21.
게재확정일 2015. 02. 24.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오원석** · 이경화***

-
- I. 서론
 - II.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대행의 개관
 - III.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현황과 관련법규
 - IV.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V. 시사점
-

주제어 :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중국 해외구매대행

I. 서론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해외직구의 규모는 올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¹⁾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물가를 높히 책정하여 국내상품이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싼 역차별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쇼핑이 간편해진 것도 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직구족을 위한 구매대행업과 배송대

* 이 논문은 2013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3894).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주저자), E-Mail : wsoh@skku.ac.kr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외국인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jinghua1214@naver.com

1) 김현기, “급증하는 해외직구, 업종별 희비 갈려”, 이코노믹리뷰, 2014.11.17.

행업도 더불어 성행하고 있으며 해외제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병행수입사업도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이 우리나라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올해 4월 지원정책을 내놓기도 했다.²⁾ 이에 힘입어 카드사들은 앞 다투어 해외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고 할인받을 수 있고 캐쉬백도 가능한 카드를 출시하고 있으며 항공사 화물부문과 택배사들도 활력을 되찾고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시대의 보편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18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앞으로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를 통한 상품이 수입될 때 자가사용이 목적이고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면세혜택이 있다.³⁾ 그리고 15만원을 넘으면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부가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은 가격에 상관없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족을 위해 구매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구매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매대행업의 등록 및 영업절차도 명확하며 시스템화되어있기 때문에 통관이나 세수관리가 편리하다.

하지만 중국은 구매대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외직구와 혼용하여 쓰기도 하고 일반 수입제품의 판매도 해외구매대행이라 부른다. 명칭을 혼용한다는 것은 서비스업인 구매대행과 소매업인 판매를 구분 짓지 않아 통관 및 세금납부과정에 혼선이 생기고, 해외직구와도 명칭을 혼용하게 되면 자가용품과 상업용품의 구분도 모호하게 된다. 법과 체계의 이러한 미흡함을 이용하여 많은 중국인들이 상업용품을 자가용품으로 속여 반입하거나 세금신고를 회피하고 나아가 제도적 미비를 이용하여 밀수행위를 관행처럼 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시장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하여 중국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직구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획재정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2014.4.9.

3)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운영하기, 휴먼하우스, 2014, p. 153.

II.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대행의 개관

1. 해외직구의 출현이유

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⁴⁾ 가까운 국내시장을 쳐쳐두고 소비자들이 해외시장을 찾는 이유는 국내소비재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을 비롯하여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점구조로 인하여 소비재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같은 제품도 해외시장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예컨대 450만원에 판매되는 삼성전자TV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운송비와 관세를 합쳐도 21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⁵⁾ 또한 해외브랜드 제품은 국내 진출시 수입상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자가 없는 독점판매상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예컨대 단돈 4200원에 수입된 휴고보스 넥타이가 백화점에서 15만원에 판매되고 모 해외브랜드 립스틱은 수입가격의 15배로 판매되는 등 현상이다. 해외 명품브랜드는 더 심각하다. 과시욕구로 물건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소비자들에게 잘 맞는다고 한다.⁶⁾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해외 명품브랜드업체들은 한국에서의 가격을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매년 4~15%의 인상폭을 유지해왔다.⁷⁾

해외직구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는 없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젊은 세대들이 쉽게 해외 쇼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어 교육과 해외유학의 보편화로 외국어로 된 쇼핑물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해외직구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2000년경부터 생겨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급성장하였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성장세는 그림1과 같으며 올해는 매출액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⁸⁾

4) 이 신조어는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자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었다.

5) 김종원, “450만 원 삼성 TV, 美 '직구'는 215만 원...한국은 봉?”, SBS 뉴스, 2013.12.01.

6) 이기웅, “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p. 320.

7) 이러한 가격인상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 후에도 계속되었다(박지훈, “왜 한국의 물건 값은 비쌀까”, 매경뉴스, 2014.06.02).

<그림 1> 해외직구 증가 추이



자료 : 관세청

2. 해외직구의 대행업무

온라인으로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국내 온라인쇼핑에 비해 언어와 결제, 배송 등 면에서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해외직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해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매는 완료하였으나 해당 쇼핑몰에서 국제배송을 지원하지 않거나 직배송료가 비싼 경우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외직구 고객들을 위하여 해외직구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업을 해외구매대행이라 하며 해외쇼핑몰에서 구매완료한 상품의 국제배송만 대신 해주는 서비스업을 해외배송대행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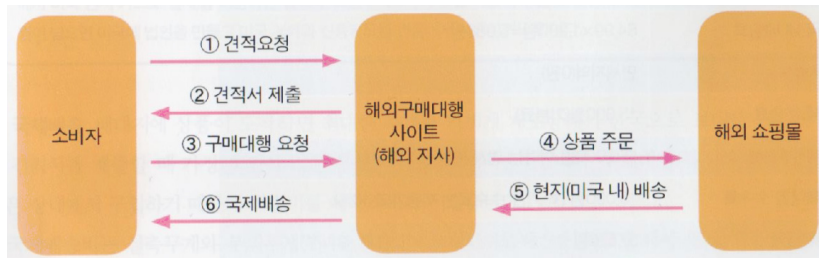
해외구매대행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⁹⁾ 먼저 고객은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은 후 상품정보를 구매대행자에게 주면서 구매견적을 요청한다. 구매대행자는 상품가격, 현지 배송비, 국제운송비, 관부가세,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견적을 제시하며 고객은 구매대행자 계좌로 견적금액을 송금하고 구매대행자는 받은 금액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상품을 구입한다. 만약 국제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나 직배송비가 비싼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자도 배송대행업체에

8) 민동훈·권다희, “제값 다 주고 사면 ‘호갱’, “뚝뚝한 직구족 못 말려””, 머니투데이, 2014.10.17.

9) 안영신, 전게서,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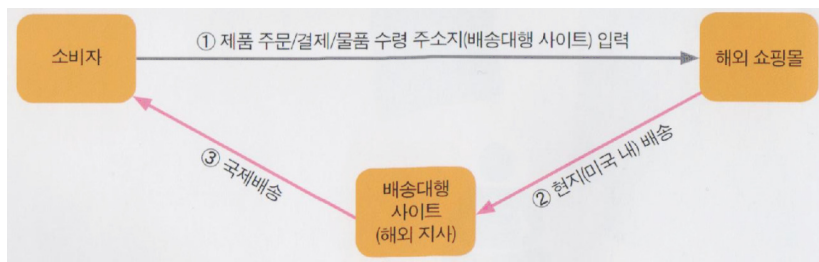
해외배송을 의뢰한다.

<그림 2> 해외구매대행 절차도



배송대행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¹⁰⁾ 고객은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 배송대행업자에게 상품정보를 주고 배송비 견적을 요청하여 받는다. 그 후 배송비를 송금하고 상품 수령지를 배송대행지의 주소로 기입하여 쇼핑몰의 상품이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도록 한다. 상품을 수령한 배송대행업체는 상품의 손상여부를 체크하고 국제항공운송에 적합하도록 재포장한 후 고객 앞으로 발송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상품은 통관하고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배송대행업체가 고객에게 미리 받아서 내거나 혹은 고객이 직접 지불하게 된다.

<그림 3> 해외배송대행 절차도



3. 해외직구의 통관과 해외구매대행의 세금신고

1) 해외직구의 통관과 관세납부

전술한바와 같이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로서 매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

10) 안영신, 전게서, p. 168.

로 한 물품이 소액일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은 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¹¹⁾ 통관절차 또한 간편하다.

직구물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받을 경우 우편물로 인정되는데, 우편물의 크기는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관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면세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통관하면 조세수입보다 경비가 더 클 것을 고려, 우편물의 통관은 공공기관인 우편당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¹²⁾ 수입신고절차 없이 우편물목록만 검사한다. 이러한 통관절차를 목록통관이라 한다.¹³⁾

직구물품을 우체국이 아닌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법에서 규정한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면세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된다. 특송업체는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하는데 세관장은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하여 X-ray 투시기를 설치하고 관독요원을 배치하여 특송물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게끔 한다. 협정상특송업체는 수입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담보해야 하며 납세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납세보증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관장은 이를 신뢰하고 즉시통관을 허용한다.

우편이나 특송을 통하여 수입통관되는 물품 중 면세물품이 아닌 것은 일반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¹⁴⁾

정리하면, 관세면제 소액물품의 기준은 15만원이고 목록통관의 기준은 \$100(미국발 \$200)이다. 예컨대 유럽에서 13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한다면 \$100를 초과했기에 목록통관이 안되고 통관 간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심사결과 물품가격 13만원은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동일물품을 동일가격에 미국에서 구입할 경우 \$200 이하이므로 별다른 신고 없이 목록통관

11) 관세법 제94조 제4호: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다. (i)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위 법규의 핵심은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이어야 한다는 것과 상업적 성질의 것이 아닌 개인적 사용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관세법 제256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은 16개이며 세관공무원이 과건근무하고 있다.

13)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미국발은 \$200) 이하여야 한다. 물품가격은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용 물품의 수입은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다. 수출입신고대상우편물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관세법시행령 제261조는 규정하고 있다.

14) 정재완, “통관차질로 인한 무역계약위반과 면책의 가능성”,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회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p. 88.

이 되며 관세 역시 면제되는 것이다.

2) 해외구매대행의 세금신고

전술한바와 같이 해외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직구를 해주는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할 때 대행수수료만 신고하면 된다.¹⁵⁾

예를 들어 고객이 구매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가격이 2만원이고 미국내 배송료가 5천원, 국제운송비가 1만 5천원, 관부가세 면제, 구매대행 수수료 1만 5천원이라면 고객은 대행업체의 계좌로 총 금액 5만 5천원을 입금할 것이다. 이러한 입금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며¹⁶⁾ 국세청은 업체의 매출액을 5만 5천원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구매대행’으로 신고하여 서비스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이 사례의 구매대행업자는 수수료 1만 5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사전에 수입하여 재고로 두고 있다가 소비자가 주문하면 바로 배송해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수수료를 추구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총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¹⁸⁾

구매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은 후 해외쇼핑몰에서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미리 구매하여 해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 역시 구매대행이 아니고 소매에 해당한다. 또한 구매대행은 배송물품의 수취인을 고객으로 기재하여 고객이름으로 수입통관이 되어야 하며 대행자의 이름으로 통관된 물품은 소매에 해당한다.¹⁹⁾

15) 이봉수,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 260.

16)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나 PG사(결제대행사)와도 계약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모든 쇼핑몰에서 진행되는 거래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다.

17) 사업자 부가세율은 보통 10%인데 매출액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간이사업자일 경우 세율이 1.5%이다.

18) 소매의 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을 정확히 구분지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이전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19) 안영신, 전게서 p. 340.

Ⅲ.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과 관련법규

1.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중국경제는 오랫동안 10%대의 고공성장을 이어오다가 최근 성장률이 하락하여 올해는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은 국민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국제시장에서 중국소비자들의 지급능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⁰⁾ 이 시점에 한국에서 해외구매대행이 발전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도 해외구매대행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며²¹⁾ 거기에 추가적인 이유로 중국소비자들이 국내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²²⁾ 눈길을 해외시장으로 돌리게 되었다.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研究中心)에서 발표한 《2013년 중국전자상거래시장데이터조사보고》(2013年度中國電子商務市場數據監測報告)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규모는 767억 위안(약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8%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올해는 1000억 위안(약 18조 172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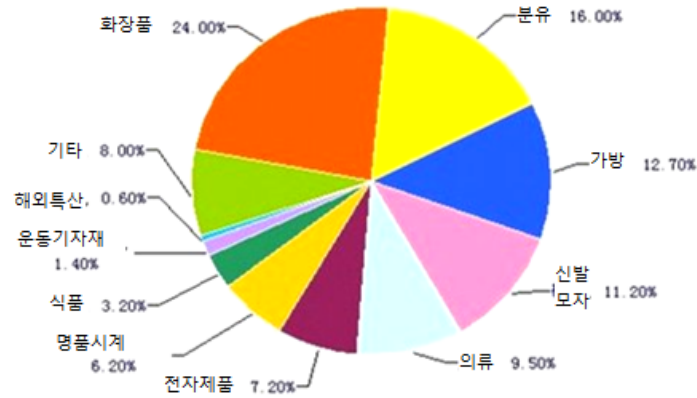
20) 林波·徐林萍, “化妝品海外代購的現狀及營銷策略分析”, 商務營銷, 2012, p. 46.

21) 해외명품의 가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많이 비싸다. 예컨대 중국에서 5750위안 하는 루이비통가방은 홍콩에서는 4841위안이고 프랑스에서는 4000위안정도밖에 안한다고 한다(李穎, “海外代購水太深”, 中國質量万里行, 2014, p. 91).

22) 몇 년전 중국에서는 불량분유 때문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소비자들이 중국산 분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중국산제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후 부모들은 중국산 분유대신 비싼 외국브랜드 분유를 구입했으며 이런 외국브랜드도 중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일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여 직접 해외시장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분유에 대한 불신은 기타 영유아용품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젓병이나 기저귀 등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려 하며 나아가 일반식품도 되도록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耿秋, “海外代購的紅與黑”, 中國新時代, 2012, p. 55).

23) 張翔, “海外代購: 易涉‘走私’ 隱藏法律風險”, 中國經濟網, 2014.08.13. 郭雨萌, “關於海外代購行業的幾點思考”, 現代經濟信息, 2014, p. 418.

<그림 4> 2011년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10대 품목



자료 : 張宏楠, “海外代購的市場機遇與挑戰分析”, 現代商業, 2014, p. 55.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의 주 구매상품은 여성들은 의류나 화장품, 가방 등, 남성들은 의류나 전자제품, 명품시계 등,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육아용품과 분유를 많이 구매한다. 또한 고객의 40%가 26세에서 30대이며²⁴⁾ 그 중 60%는 월 소득이 1.1만 위안(약 200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층으로 이루어졌다.²⁵⁾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해외제품을 찾는 이유는 국내제품에 대한 불신보다 해외브랜드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명품의 가격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가격차이가 큰 것도 한 몫 한다. 중국의 상무부²⁶⁾ 자료에 따르면, 시계, 가방,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다섯 가지 상품의 해외 20개 명품브랜드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의 가격이 홍콩에 비해 약 45%, 미국에 비해 약 51%, 프랑스에 비해 약 72%가 높게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중국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의 운영

중국 관세법의 관련규정에 보면 중국은 수출입물품을 “물품”과 “화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통관절차와 관세율을 적용한다. “물품”이라함은 무역의 성격을 띠지

24) 馮凱, “網絡海外代購業務分析”, 科技廣場, 2012, p.130.

25) 陳芳, “海外代購市場規模今年將達千億”, 中國商網, 2014.09.25.

26) 상무부는 국가의 경제와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국무원 소속 내각의 하나이다. 국무원은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행정기관에 업무지도를 하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않는 자가용품을 말하며 국내에 반입된 후 매매나 임대 불가능하다. 이런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화물”은 무역의 성격을 띠며 가격에 상관없이 정상통관절차를 거치고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직구는 자가용품을 구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품”의 범주에 속하고 구매대행도 해외직구를 대신 해주는 행위이기 에 역시 “물품”의 범주에 속한다.²⁷⁾²⁸⁾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하는 전문 구매대행업자와 SNS로 지인들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쇼핑몰 업자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현물구매대행(現貨代購)과 단순구매대행²⁹⁾(非現貨代購)이 있다.³⁰⁾ 현물구매대행은 구매대행을 의뢰받기 전에 미리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반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업자를 말하고, 단순구매대행은 우리나라와 같이 구매의뢰를 받고 송금은 받은 후 그 대금으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업자들을 말한다.³¹⁾ 현물구매대행업자는 사실 일반 판매업자로서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화물”의 범주에 속하며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은 국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개인대행업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가용품으로 속여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화물”을 “물품”으로 둔갑하여 감면세 혜택을 누리는 편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또는 해외여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화장품과 같은 물품을 구입해 입국한 후 SNS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판매한다. 이는 중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위의 영업방식들은 중국에서 모두 “구매대행(代購)”으로 불리는데 제2장에서 기

27) 喬佳瑜, “海外代購行爲的法律分析”, 當代工人, 2012, p. 76.

28) 중국정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http://www.gov.cn/gzdt/2010-09/03/content_1694986.htm) “물품”과 “화물”을 본고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즉, “물품”은 대금지급을 대가로 하지 않는 자가용품이며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내준 우편물품이 그 예이다. “화물”은 매매계약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대가로 받는 물품을 말하기에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은 모두 “화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으로 배송받는 직구행위도 “화물”의 수입에 속하기에 그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하여 보충할 예정이다.

29) 직역하면 비현물구매대행이지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구매대행으로 쓴다.

30) 張郁, “網絡海外代購中的走私犯罪分析及偵防措施研究”, 公安研究, 2014, p. 37.

31) 단순구매대행만을 진정한 구매대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실무에서처럼 구매대행의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康曉燕·宋炳良, “傳統海外代購困境探析”, 人力資源管理, 2014, p. 38.)

술한 바와 같이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이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아니 된다. 하지만 중국의 온라인시장에서는 관련법률과는 상관없이 “구매대행”이란 명칭을 해외상품 판매와 대리구매업무에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3.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관련법규

중국세관이 2010년 9월에 발표한 《자가사용 우편물품의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리조치》(海關總署解讀進出境個人郵遞物品管理措施調整)에 따르면 중국은 과세액이 50위안(약 9천원)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³²⁾ 1회 우편물품금액의 상한선을 1000위안(약 18만 2천원)으로 제한한다.³³⁾ 관세가 50위안을 넘는 우편물품은 물품금액 전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후 통관하며, 물품금액이 1000위안을 넘는 우편물품은 반송하거나 또는 “화물”로 갈음하여 관세 징수 후 통관한다.

휴대품의 경우 우편물품과 다른 면세요건이 적용된다. 중국세관이 2010년 8월에 발표한 《입국여행자 휴대물품의 감면세규정》(關於明確進境旅客行李物品征免稅規定)에 따르면 개인휴대품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하며 5000위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현물구매대행에 종사하는 구매대행업자, 즉 일반 무역업자는 “화물”을 수입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세칙》(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순구매대행은 해외직구족을 위하여 대행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가사용 우편물품의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리조치》 및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물품 수입세율표》(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進口稅稅率表),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물품 분류》(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歸類表),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물품 과세가격표》(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完稅價格表)등에 따라 통관한다.

위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 중국 형법 제153조는 개인의 밀수행위에 대하여 탈세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보통화물·물품밀수죄(走私普通貨物·物品罪)를 구성하며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한다.

32) 기존의 규정은 과세액이 500위안 이하면 면세였는데 화물수입자들이 화물을 물품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아 면세범위를 50위안으로 대폭 조정했다. 이로 인해 설령 물품으로 둔갑한다 하더라도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허나 이러한 조치는 진짜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선의의 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다(潘濤·朱琳, “淺析網絡海外代購的問題”, 時代金融, 2013, p. 279).

33)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보내온 자가사용 우편물품의 한도는 800위안으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적용한다.

부가세는 《재무부 국가세무국의 부가세·영업세 정책규정에 관한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增值稅、營業稅若干政策規定的通知)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³⁴⁾

이 규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첫째, 대행업자가 구매대금을 대납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해외판매상이 실구매자(소비자)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셋째, 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실제 해외판매가격, 운송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야 한다.³⁵⁾ 즉 정상적인 구매대행의 절차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실체를 보면 업자가 구매대금을 선납하거나 구매영수증을 소비자 앞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을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 규정한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자들은 “구매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납부를 피하고 있는데³⁶⁾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다.

IV. 중국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중국 해외구매대행의 밀수사례

1) 사건개요³⁷⁾

중국해남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활동했던 이효항(李曉航)은 회사에서 나온 후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 화장품가게를 입점하고 한국의 친구가 면세점에서 대량의 화장품을 구입해주면 이것을 휴대하고 입국한 후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녀는 많은 량의 화장품을 갖고 여러 차례 입국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탈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2011년 4월 19일 심양공항으로 입국하다가 검사에 걸리면서 개인휴대물품은 5000위안(약 91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30일 이효항은 남자친구와 함께 베이징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또 검사에 걸렸으

34) 중국의 부가세는 17%이다(田昊炜·田明華·邱洋·程思瑤, “網絡海外代購對我國的影響和對策”, 北方經貿, 2012, p.57).

35) 梁文濤, “代購行為在四種不同情況下的稅務籌劃”, 財會通訊, 2013, p. 105.

36) 喬佳瑜, 진게논문, p. 77.

37) 王楠, “北京‘前空姐代購走私案’重審改判:判刑3年”, 新華網, 2013.12.17.

며 가방에는 10만 위안(약 1800만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이 있었고 그들은 고의탈세혐의로 체포되었다.

2012년 7월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보통화물밀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누적 탈세액이 109만 위안(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이효항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각각 징역 11년과 7년으로, 벌금 50만 위안(약 9천만 원)과 25만 위안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중국여론은 “형이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³⁸⁾ 2013년 5월 6일 항소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무효처리하고 재심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심을 위하여 이효항이 그동안 휴대입국한 화장품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였으며 결과 탈세액이 8만원(약 1400만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11년 징역형이 3년으로 줄었고 벌금도 4만 위안으로 대폭 줄었다. 그녀의 남자친구도 2년 6개월의 징역과 2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2) 사건검토

이 사례에서 이효항은 물품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품을 휴대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했다. 실제로 이효항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후 중국으로 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의 기회를 이용하여 화장품이나 의류를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 및 판매한다. 이효항은 그 중의 한사람일 뿐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법규가 미흡하고 또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숙지시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국가의 법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다.³⁹⁾

이효항은 수차례 검색대를 지났지만 적발된 것은 단 두 번뿐이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고 두 번째 적발되었을 때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 중국의 여론은 이효항이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통관검사는 선별검사로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어느 항구 또는 공항이 검사를 엄격히 하고 선별비율이 높은지 미리

38) 당시 한 포털사이트(人民網)에서 이 판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95.7%가 “형량이 너무 지나치다”고 답했고 3.2%만이 “판결에 동의”한다고 선택했다(張郁, 전제논문, p. 40).

39) 중국에는 “上有政策, 下有對策”라는 말이 있는데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뜻, 즉 국가의 법률과 정책이 어떻든지 국민은 그것을 피할 길만 강구한다는 것이다. “위법, 편법”은 중국에서는 일종의 문화인 셈이다.

알고 그런 곳은 피한다.⁴⁰⁾ 이와 같은 선별검사제도가 그들로 하여금 “선별에 걸리지 않으면 큰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이효항은 1심에서 탈세액이 109만 위안으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는 탈세액이 8만 위안인 것으로 판단 3년형을 선고하였다. 1심과 2심은 이효항의 탈세행위를 모두 “보통화물밀수죄”로 보았지만 탈세액의 차이가 아주 크다. 이는 중국이 아직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매출산정기준과 밀수의 처벌기준 등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중국에서 과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이효항이 세금을 탈세했다는 것만 알 뿐이다. 국가나 언론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휴대품의 반입규정, 우편물의 반입규정 및 매매가능 화물의 반입규정 등에 대해 교육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한 화물은 검사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관세, 부가세⁴¹⁾, 소비세 등도 개인물품과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규정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구매대행업자들 중 구매대행서비스업이 아닌 해외상품을 미리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모두 위와 같이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2. 중국 해외구매대행의 문제점 - 밀수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은 일반적인 구매대행서비스는 극히 드물고 미리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시 관세, 부가세 그리고 일부 사치품은 소비세까지 납부해야 한다.⁴²⁾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일부 구매대행자들은 상품의 포장을 뜯고 상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세관이 상품의 품명과 가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또는 부피가 작은 사치품은 본인이 직접 착용하고 입국하거나 개수가 많을 때는 여러 입국자들이 일부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검색에 걸려도 빠져나올 수 있다.⁴³⁾

또 “冲關”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이 입국시간을 맞춰 같은 시간에 홍콩-중국 입구를 통과함으로써 검색에 선택될 가능

40) 예컨대 천진, 상해 등 항구는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심천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알려졌다.

41) 중국의 부가세는 增值稅라고 하며 개념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

42) 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품의 국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싸게 판매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王杉杉, “海外代購的法律分析”, 法制與社會, 2013, p. 263).

43) 徐俊, “新政策下網絡海外代購發展探析”, 電子商務, 2010, p. 28.

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홍콩은 수입자유방입제를 실시하여 97%의 수입물품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된다. 따라서 많은 구매대행 업자들은 우선 홍콩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沖關”의 방식으로 중국으로 입국한다. 입구에는 보통 3~5명의 검사원이 배치되고 한 대의 X-Ray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대부분 쇼핑객이라서 선별검사가 쉽지 않다.⁴⁴⁾ 2010년부터는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자가용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세액이 50위안(약 9천원) 이상이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사용 우편물이 관세납부대상에 속한다. 이런 규제강화로 인해 홍콩으로 수입한 후 “沖關”하는 밀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물품의 용도와 가격을 속여서 입국하는 방식이다. 보통 소량으로 거래하는 개인대행업자들은 해외에서 한두박스 분량의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구입한 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입국함으로써 물품에 부여되는 관세혜택을 누린다. 또는 판매용으로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한 박스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같이 담거나 X-ray에 잘 나타나지 않도록 박스 안쪽 면에 책으로 도배하기도 한다. 동일 이름과 주소로 수차례 해외우편을 주고받아도 판매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계속 바꾸기도 한다. 물론 송장가격을 낮게 기재하여 수입세가 50위안을 넘지 않도록 조작한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우편물품을 받게 되면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운이 안 좋아 검색에 걸리게 되면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송하거나 또는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를 내고 수입한 물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SNS를 통한 판매가 힘들어 진다. 이와 같이 탈세행위를 발견하고도 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관행이 국민들로 하여금 행위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한다. 중국 형법에는 “밀수로 탈세한 금액이 5만 위안(약 9백 만원) 이상이면 보통화물·물품밀수죄(走私普通貨物·物品罪)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액 탈세자는 관세를 추징하면 끝난다.⁴⁵⁾

단순해외구매대행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주문을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액으로 구매를 진행하는데, 소비자에게 견적을 제시할 때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으니 관세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세관의 검색에 걸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⁴⁶⁾

44) 張郁, 전계논문, p. 39.

45) 탈세액이 5만위안 미만인 소액 탈세행위는 일반밀수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밀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張郁, 전계논문, p. 39).

46) 李穎, 전계논문, p.91.

중국에는 이와 같은 소액 탈세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물류업체들도 성행한다. 그런 물류업체를 이용하면 물품의 포장이나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검색에 걸리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방식은 “代工”이라는 건데, 인천항에서 대량의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중국의 모 항구까지 운송한 후 통관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검사도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운송비를 물품의 가격이 아닌 무게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게가 작고 고가인 상품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이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시장은 밀수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정비나 관련법률이 미흡하며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구매대행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⁴⁸⁾ 중국세관은 올해 8월 1일에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화물/물품에 관한 관리감독공고》(關於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를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개인, 결제기업, 물류기업 등은 제때에 거래, 결제, 보관, 물류 등 상황을 전자상거래 통관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미 관습으로 자리 잡은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밀수행위가 법규의 제정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규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위반사례 적발 시 얼마나 엄격히 처벌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 같다.⁴⁹⁾

3. 중국 해외구매대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중국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구매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정의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구매대행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의 업

47) 이 내용은 중국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탈세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보들로 구성한 것이다.

48) 상업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행정관리국과 상무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경영행위에 속한다.

49) 중국에서 많은 량의 짝퉁이 생산되어 세계시장질서를 어지럽힘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짝퉁생산을 단속하는 규제책만 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이유는 짝퉁의 생산이 하층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짝퉁의 수출로 외화수입이 확보되며 짝퉁기술이 나중에는 중국 기술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實利추구의 문화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구매대행시장의 밀수문제도 장기방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무절차규칙을 만들어 구매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모든 업체들이 이 규칙대로 업무를 진행하여 서비스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상품매매를 하려는 자는 우선 등록을 하고 모든 수입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유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는 모두 정부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관련 법규나 규칙을 제정 및 보완해야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규칙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통관절차는 완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송장 바코드가 찍히면 상품명, HS 코드, 관세율, 세액, 면세대상 여부 등 중요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되고 이 정보에 따라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이 자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은 한국세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수입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선별검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수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운송장에 상품명이나 가격, 수량, 자가사용 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세수유출이 계속된다. 이런 행위는 의심물품을 오픈해서 검사하는 방법밖엔 없으며 이 부분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에서 밀수가 성행하고 관행처럼 행해지는 것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이 낮고 위법에 대해 둔감하며 세수나 통관분야 근무자들의 부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그 상품이 밀수품이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이 마인드를 바꾸고, 쇼핑몰운영자와 구매대행업자는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지향성 영업을 해야 할 것이며, 국제특송 업체들은 사리를 위하여 뇌물로 국내외 통관 관련인사를 매수하여 공공연히 밀수를 진행하는 악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V. 시사점

본문에서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직구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해외직구를 겨냥한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은 중국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직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쇼핑몰은 중국어홈페이지로 호환되긴 하지만 아직도 중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지 않아 사용하기 불편하다. 기업들은 상품을 단순 수출 외에도 중국 직구족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도 판매하여 시장을 넓혀야 하며 중국 직구족들을 모으기 위하여 중국맞춤형 온라인쇼핑몰을 제작 및 홍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카드로 쉽게 우리나라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며 저가의 해외배송서비스도 필요하다.

온라인마켓도 중국인 전용쇼핑몰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송업체나 배송 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도 중국시장만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Black Friday**⁵⁰⁾라는 연말 할인행사시즌이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할인판매를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할인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전문 구매대행이나 쇼핑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영유아용품과 의류에 포커스를 맞추어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상품판매 이외에도 반품, 교환, A/S서비스도 최대한 편리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소비자가 구매한 바지가 사이즈가 작아 교환하려고 하면 이를 온라인 교환신청을 한 후 중국에 주소를 둔 어느 한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한국쇼핑몰에서는 온라인신청을 확인 후 기존제품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제품을 발송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은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하는데, 인터넷에 서툰 중년도 온라인쇼핑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의 소비품을 위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지만 건강식품이나 안마의자, 온수매트 등을 중국 중년들을 상대로 판매하면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중국시장 온라인시장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니 직접 중국에 진출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판매업이 아니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50)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진다고 하는 날을 말한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검다’는 표현은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재한다는 데서 연유한다.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세일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날이기도 해서 관련업계에선 이날 매출액으로 연말 매출 추이를 점친다(매일경제 용어사전).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2014.
- 김기인, 한국관세법 기초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김종원, “450만 원 삼성 TV, 美 '직구'는 215만 원...한국은 봉?”, SBS 뉴스, 2013.
- 김현기, “급증하는 해외직구, 업종별 희비 갈려”, 이코노믹리뷰, 2014.
- 민동훈·권다희, “제값 다 주고 사면 '호갱', '똑똑한 직구족 못 말려'”, 머니투데이, 2014.
- 박지훈, “왜 한국의 물건 값은 비쌀까”, 매경뉴스, 2014.
-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운영하기, 휴먼하우스, 2014.
- 이기웅, “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이봉수,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정재완, “통관차질로 인한 무역계약위반과 면책의 가능성”,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회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徐俊, “新政策下網絡海外代購發展探析”, 電子商務, 2010.
- 喬佳瑜, “海外代購行爲的法律分析”, 当代工人, 2012.
- 林波·徐林萍, “化妝品海外代購的現狀及營銷策略分析”, 商務營銷, 2012.
- 田昊炜·田明華·邱洋·程思瑤, “網絡海外代購對我國的影響和對策”, 北方經貿, 2012.
- 耿秋, “海外代購的紅与黑”, 中國新時代, 2012.
- 馮凱, “網絡海外代購業務分析”, 科技廣場, 2012.
- 潘濤·朱琳, “淺析網絡海外代購的問題”, 時代金融, 2013.
- 梁文濤, “代購行爲在四種不同情況下的稅務籌劃”, 財會通訊, 2013.
- 王楠, “北京‘前空姐代購走私案’重審改判:判刑3年”, 新華網, 2013.
- 王杉杉, “海外代購的法律分析”, 法制與社會, 2013.
- 郭雨萌, “關於海外代購行業的幾點思考”, 現代經濟信息, 2014.
- 張宏楠, “海外代購的市場機遇與挑戰分析”, 現代商業, 2014.
- 李穎, “海外代購水太深”, 中國質量萬里行, 2014.
- 張郁, “網絡海外代購中的走私犯罪分析及偵防措施研究”, 公安研究, 2014.
- 康曉燕·宋炳良, “傳統海外代購困境探析”, 人力資源管理, 2014.
- 陳芳, “海外代購市場規模今年將達千億”, 中國商網, 2014.
- 張翔, “海外代購:易涉走私 隱藏法律風險”, 中國經濟網,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and Problem Concerning Overseas Shopping Service

Won-Suk OH · Jing-Hua LI

With the steady growth of our nation's economy, the purchase power of our domestic citizens has continuously enhanced. In recent years, online overseas shopping has rapidly warmed up,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people have started to purchase overseas products via internet.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islation, the imported goods are divided into goods and items based on "profitability standard", and regulated by different rules of clearance supervision and import duties. Goods can't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and the import duties burden of goods is generally much heavier than that of items. Goods of entrusted overseas shopping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but goods of profitable purchasing are goods, not items. Therefore, the 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is smuggling. Although goods of unprofitable purchasing are items, un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may also constitute smuggling.

The author concludes that causes of smuggling crime are: huge market demand for overseas goods, lack of customs supervision, law blank of petty foreign trade, and public's misconception of entrusted overseas purchasing are the major factors. The author proposes the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such as to establish an one-stop service system in online Shopping Mall, to modify the Passengers' Baggage Declaration Form, to establish a relatively simplified clearance system of small cargo, to establish a relatively reasonable import duties of petty trade.

Keywords : Shopping Abroad, Overseas Shopping Service in China, Problems in Overseas Shopping Service